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3244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418호)	정태호의원	2024.7.3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4267호)	김소희의원	2024.9.2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7392호)	김소희의원	2025.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8420호)	이소영의원	2025.2.2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9876호)	김소희의원	2025.4.1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2025. 9. 22.)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5.9.23.)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더해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2539호)	위성곤의원	2025.8.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9. 19.)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며,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

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동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며, 의무 미이행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기술 개발 및 적응역량 강화를 추가함(안 제70조).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안 72조 및 제72조의2).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4항).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재”를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로, “높이고”를 “높이며”로, “보호하며”를 “보호하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순배출량”을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결과 보고서”를 “다음 해 9월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출 방법 등에”를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를”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을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제72조제5항 중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제70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37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높이며----------보호하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순배출

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 ----------.
4. ~ 17. (생 략)	4.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③ (생 략)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다음해 9월말까지 그 결과보고서----------

	--.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순배출량----------.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순배출량----------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신 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	⑤ ----------장애인, 노동자----------

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장애인, 노동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생 략) <신 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2. (생 략) <신 설>	제70조(기금의 용도) ----------. 1.·2. (현행과 같음)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

	량 강화
3. ~ 11. (생 략)	4. ~ 12. (현행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까지의----------.